

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

발급번호 :

신 청 인 (건축주)		전화번호	
주 소			
기계설비설계자		전화번호	
주 소			
건축허가 번호		건축현장명 (소재지)	
검 토 의 건			
보완사항			
관련 근거 (기술기준 등)			
확인자	소속	성명	(서명 또는 인) 전화번호

「기계설비법」 제1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를 통보합니다.

※ 「기계설비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는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며,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재시공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보완 후 착공해야 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
시장·군수·자치구구청장

직인